

의안
번호

14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9. 06.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149호
- 다. 제출일자 : 2023. 08. 29.
- 라. 회부일자 : 2023. 08. 31.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2019.12.3., 법률 제16666호)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3조~제4호)
- 다.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평가 및 기록(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7. 13. ~ 2023. 08. 0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과 제5항¹⁾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상황 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설치·운영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고, 단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단장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신설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원단 간의 재난상황정보 공유와 자원봉사활동 내역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지원단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단 운영 결과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북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여 재난 수습의 필수 자원인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조정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차지하는 봉사활동의 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재난 현장에서 전개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통해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